1-26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1)법무부장관

□ 권고 내용

○ 국회의장·**법무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환경부장관·공정거래위원장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의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인과관계 추정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민사법상 '자유심증주의' 및 '입증책임'**이라는 기본 원칙에 **위배**

- 인과관계와 같은 사실관계의 확정은 법관이 제반 사정을 합리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음에도, 법률로 이를 일률적으로 추정하도록 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에 반함

-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청구인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민사법상 원칙으로, 법률을 통해 일률적으로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것은 입증책임의 대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

-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미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여 사업주 등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중처법 준수의무를 강화하고 있는데 여기에 인과관계 추정 규정까지 도입할 경우 피해와 행위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도 사업주 등에게 과도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할 우려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